KOSHA Guide C-47-2023

- (12) 중기를 사용한 해체작업 중 발생되는 분진의 비산을 막기 위해 살수할 경우에는 살수 작업자와 중기 운전자가 서로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 (13) 쇼벨계 건설기계는 해체물 비산 등에 의한 전면창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방호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4) 철근 용단 등의 작업을 위해 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의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15) 해체 구조물 구조규격, 노후정도 등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사전에 중기, 해체작업 시 발생 폐기물 등으로 인한 작업 및 충격하중, 적재하중 등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고 임시 버팀 설치 등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 (16) 중기 이동용 램프 조성 등 중기가 해체물을 깔고 올라가 작업 또는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중기가 넘어지거나, 구조물이 무너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고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 (17) 파쇄작업은 상층에서 하층 방향으로 슬래브, 보, 벽체, 기둥의 순으로 하는 등 구조물 구조특성을 고려하여 무너짐, 넘어짐 등의 위험이 없는 순서로 작업하여야 한다.
- (18) 절단 등의 방법으로 블록 단위로 구조물을 해체하여 들어낼 때에는 넘어짐, 맞음 등의 위험이 없도록 사전에 작업순서 결정 및 걸이설비, 양중작업 등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19) 흙에 접한 구조물을 흙막이 지보공 부재로 활용할 경우에는 토압에 대한 지지력 검토 등 해체 대상 구조물 또는 인접 시설물의 무너짐, 중기 넘어짐 등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20) 해체 구조물 내·외부의 화재, 폭발, 중독 등의 유해·위험물질은 산업안전 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 하여 사전에 제거 또는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1) 구조물을 부분 해체 또는 주변 구조물 또는 시설물에 근접하여 해체할 때에는 구조물의 남은 부분 또는 인접 구조물 등이 해체공사 진동, 충격 등에 안전하도록 사전에 구조보강, 보호시설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